

의안번호	2213314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6. 4. 3.
추 계 번호	25B5227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6조(산림 재난방지 교육)	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<u>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</u> (제2항) 5. 산림재난피해지 및 그 인접 지역 주민<신설> 6. 산불 발생 위험지역,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병해충 위험지역 주민<신설> ※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 확대	의무규정
		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<u>이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</u> 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6조제2항(산림 재난방지 교육)	•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¹⁾의 장이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,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,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등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1)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함

[표 1] 산림재난방지 교육 관련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사업	사업 내용	2025	2026
산불·산사태·산림병해충	산림재해일자리 (2332-301)	산불교육 및 훈련	-	1,338
산불	산불방지대책 (2332-300)	산불교육 및 훈련	910	910
산사태	산림재해일자리 (2331-301)	산사태현장예방단	2	-
산림병해충	산림재해일자리 (2331-301)	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	1,206	-
	한국임업진흥원 지원 (1542-300)	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	300	-
	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 공단 지원(1542-300)	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	-	300

주: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사태현장예방단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 대응단으로 통합 운영('26~)

자료: 산림청 제출자료

-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에 산림재난피해지²⁾ 및 그 인접 지역 주민과 산불 발생 위험지역, 산사태 취약지역³⁾ 및 산림병해충 위험 지역 주민을 포함하고,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이 확대되고, 산림재난방지 교육 위탁 기관에 교육 실시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·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⁴⁾하고 있어 교육 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별 교육의 내용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, 현시점에서

2)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

3)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함

4) 제56조(산림재난방지 교육) ④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·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는 산림재난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업무의
범위 및 지원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
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산림재난방지 교육 실시 현황

(산림청 제출자료)

구분	교육대상	교육내용
산불	산림청·지자체 산불진화인력 (산불재난특수진화대,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불감시원)	■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초지식 ■산불진화 장비 실습 및 안전수칙 등
	군·국립공원 등 유관기관	■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초지식 ■산불진화 장비 실습 및 안전수칙 등
	일반 국민 (농·산촌 주민, 학생 등)	■산불발생시 신고 대처요령 등
산사태	일반 국민 (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 인접 지역 거주민, 어린이·청소년)	■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* 산사태의 위험성과 위험 징후·지역 확인 방법, 사전 대피 등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중심 교육
	공무원 (산사태 대응 유관기관)	■산사태 대비·대응을 위한 협조 사항 교육 * 산사태 위기 징후, 대피 유도 방법 등
	산사태현장예방단	■산사태현장예방단 업무 수행 교육 * 취약지역 점검, 피해지 응급조치, GPS활용 등
산림 병해충	산림청·지자체 담당공무원	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, 법령 및 지침, 방제 품셈, 방제사업장 안전관리 등
	방제사업자 (설계·감리, 시공)	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, 법령 및 지침, 방제 품셈, 방제사업장 안전관리 등
	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	■소나무재선충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· 방제 방법, 방제 약품 취급 등 안전 수칙